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04
------	------

2025. 6. 27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김형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6.19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형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, 선정배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(안 제6조제3항).
- 나. 위원회 심의 시 홍보 소재 배제 사유 구체화(안 제12조제2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분야를 확대하고,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대외적으로 비방하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·3. (생 략)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<u>홍보</u>하는 기업 및 단체</p> <p>2.·3. (생 략)</p>	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</p> <p>1. ----- <u>홍보하거나 비방하는</u>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(2)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 현황

- ‘홍보매체 시민개방’이란,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등의 홍보 소재를 서울시의 홍보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2025년 ‘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’ 사업의 일부로 2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- 동 사업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, 비영리법인·단체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이 응모자격을 가짐.
- 서울시는 공정한 소재 및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, 조례에 명시된 심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.

(3)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

1) 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(제6조제3항)

- 현행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①광고, 언론, 산업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②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③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홍보 소재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, 실제로 광고·언론·디자인 계열의 전문가가 대부분의 위원 구성을 차지함.
- 그러나, 동 사업의 취지는 단순히 양질의 홍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지 않고 공익 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에

있는 만큼 소기업 및 소상공인·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목적과 수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2) 홍보 소재 선정 배제사유 확대(제12조제2항제1호)

- 동 조례에 따르면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나,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경우는 선정 배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그러나 지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단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음이 지적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- 이에 동 개정안은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소재 선정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기덕, 김용호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송경택, 유만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, 선정 배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(안 제6조제3항).
- 나. 위원회 심의 시 홍보 소재 배제 사유 구체화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홍보하는”을 “홍보하거나 비방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<u>홍보</u>하는 기업 및 단체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홍보하거나 비방하는</u>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(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을 추가¹⁾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구성원 신분에 의한 재정소요 변동 검토] 회의 참석 시 민간위촉 위원은 참석수당(대면심의 1인 1회 150,000원)과 업무 추진경비(1인 30,000원)가 전부 지급되나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참석수당이 미지급 되므로 이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가 비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
○ (검토내용) 해당규정은 위원회 총 정원 변동과 관련이 없고, 또한 현재까지 전부 민간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불 경우 위원 신분 변화에 의한 위원회 운영비용 변동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※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 문의결과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됨을 확인함